

 인천광역시

366만 경제수도, 도약하는 인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용 및 절차 안내

인천에서
당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으세요.

문의처 : 032-820-1100
032-820-1101

I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및 지원절차

1 회원가입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에 회원가입

2 기업정보등록

[마이페이지]클릭 → [기업정보등록(변경)] 클릭 → 정보입력 및 파일업로드

※ 업로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각종 우대
기업서류(해당기업만)

3 온라인신청

메인화면 상단의 [기업지원의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클릭 → 사업게시
판에서 [신청사업 공고] 클릭 → 정보입력 및 파일업로드

※ 업로드 서류 : 자금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서류, 기타 지원자금별 추가서류

※ 입력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4 상담일정확정

온라인 접수승인 후 SMS로 향후 진행사항 통보 →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
지원신청내역]에서 방문날짜 확인 및 신청서 출력

5 사전대출상담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의 사전상담 (신청서에 상담확인도장 날인)

6 방문상담/심사

상담확인도장이 날인된 신청서를 가지고 방문 → 상담 및 진행사항 안내

7 지원결정/통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 → 대출실행

I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1 제조업

제조업 요건 2가지를 충족하여야 지원가능

①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이 [전체매출]의 30% 이상 차지

※ 개인사업자는 표준이 아닌 일반재무제표 확인원에서 [제품매출] 확인 가능

② 공장등록 (또는 건물용도 확인)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반드시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함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이 있거나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제조소로 확인되어야 함

2 비제조업

사업자등록증 표기내용만으로 증빙되지 않으며, 반드시 관련된 등록증 또는 허가증이 있어야 지원가능

☞ 세부업종 및 확인서류는 뒷장의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구비서류]에서 확인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1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및 지원금리(이자보전)
일반지원	지원한도 : 4억원 이자보전 : 1회차 (2.5%), 2회차 (2.0%), 3회차 (1.5%)
우대지원	여성기업 : 5억원 (3.5%)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인대상 : 5억원 (2.5%) 비전기업 : 10억원 (2.5%-C2연계시) 향토기업 : 20억원 (2.5%-C2연계시) 인천시이전기업 : 10억원 (2.5%) 자연재해기업 : 4억원 (4%) 장애인기업 : 4억원 (4%) 고용우수인증기업 : 8억원 (2.5%)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 : 2천만원 (2.5%)

① 횟수산정 기준

- 2004년도부터 소급해서 적용, 4회째부터는 지원불가 (3회차 자금 만기일로부터 5년이후 재신청 가능)
- 우수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유망중소기업, 우리시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은 회차구분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회차구분없이 항시 우대
- 자연재해기업은 회차구분, 횟수제한 없이 항시 우대

②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③ 기존 신규고용창출조건 지원폐지

- 고용우수인증기업 인증서(중앙 및 시선정) 획득기업만 한도증액 가능

④ 대출금리 수준 : 기업체 자율선택 (고정 및 변동)

- 인천시에서는 조건에 해당되는 이자차액을 보전함

⑤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후 6개월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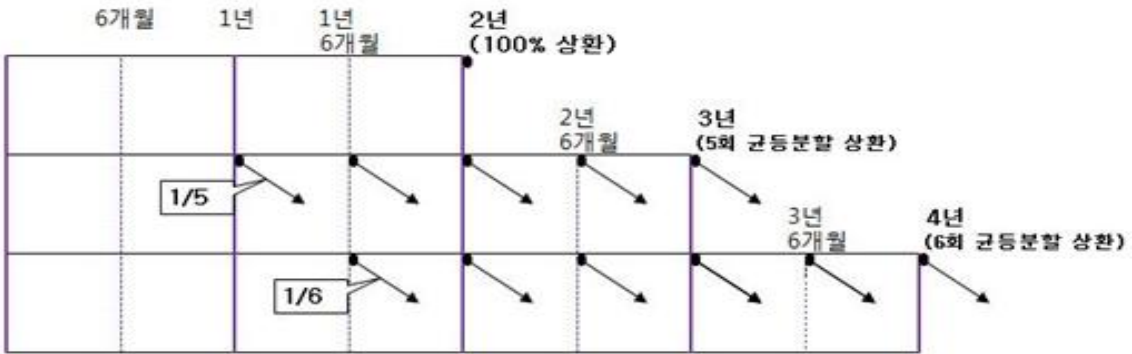
- ※ 대출기간 만료 6개월 이전이라도 매출액대비 지원한도내에서 기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신청가능

I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2 상환방법

구분	내용
2년	2년만기 일시상환
3년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 상환
4년	1년 거치 6회 균등분할 상환

『대출상환방법 예시』



3 지원제외 대상

- ① 시 또는 군/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액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 이 남아있는 업체는 지원가능
- ② 부동산업,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③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향토, 비전, 유망, 중소기업인 대상수상 기업 제외)
- ④ 휴·폐업중인 업체, 제조업 전업을 30% 미만인업체 (제조업체에 한함)
- 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기업
- ⑥ 중소기업청 고시(제 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⑦ 세금체납중인 업체
- ⑧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창업5년이상 업체
 - 제한기준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구비서류

공통 및 업종별 증빙서류

제출서류		비고	
공통 서류	경영안정자금 사용 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별도첨부 없이 온라인으로 작성 ※ 계획서 및 동의서는 접수사이트 공고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소정양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 제조업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일반재무제표증명원만 가능(표준재무제표 불가)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업종 별 증빙 서류	제조업	공장등록증명원 1부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업소/소유주표기), 임대차계약서(임차공장일 경우) 각1부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종합, 소형) 등록증 1부	
	시내버스 , 택시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1부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1부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각1부 (한국무역협회 발급)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입주확인서 1부 (정부 . 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	
	FTA 인증 수출업체	FTA 인증수출자 선정서 1부 (관세청 발급)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업체	인천시선정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 선정서 1부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추천기업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1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업종범위는 (붙임) 참고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1부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바람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구비서류

우대기업 증빙서류

우대기업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고용우수인증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중앙 및 인천시 선정)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시지정 비전기업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1부	
시지정 향토기업	인천시지정 향토기업 선정서 1부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업체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부	
자연재해업체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1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군·구, 읍·면·동 발급)	사유발생 3개월 이내
관내이전업체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이전날짜 표기되어있는 것) 개인 : 사실증명원 1부 (세무서 발급)	사유발생 1년 이내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www.smpp.go.kr 발급)	발급문의 : 1666-9988
여성기업인	여성기업인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발급문의 : 032-260-3602

[붙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식서비스업

업종범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범위』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운송업	501
화물 취급업	5294
창고업	521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1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2992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6939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74212
폐기물 수집·운반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381 (39009)
폐기물 처리업	382
폐수 처리업	3701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범위』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99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시장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71400
경영컨설팅업	7153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73202, 73203, 73209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지식서비스업 범위』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콜센터·텔레마케팅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